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민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02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: 이민석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고광민, 김원태,
김종길, 김태수, 남창진,
박 석, 서상열, 이봉준,
이상욱, 이효원, 최민규,
허 훈, 황유정 의원(14
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계획 관련 다양한 위원회의 통합 운영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절차를 제공하고자 도시재생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 예정임.
- 이에 따라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(안 제30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시행령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시 도시재생위원회”를 “시 도시계획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) ① · ② (생 략)	제30조(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 설치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 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<u>시 도</u> <u>시재생위원회</u> 로 한다.	③ ----- ----- <u>시 도시</u> <u>계획위원회</u> -----.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0조(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설치)제3항의 내용을 수정(시 도시재생위원회 → 시 도시계획위원회)하여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변경하고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 계 분 석 관	김 진 형

☎ 02-2180-7954

e-mail : kjh0816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